

IIRI Online Series

기후위기와 인권

조 효 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2023. 7. 25

기후위기와 인권



조 효 제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기후위기를 인권 문제로 본다는 의미

2023년 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결정문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표명>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정부(대통령)에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합니다. 1. 기후위기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직·간접적으로 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적 의무로 인식하고, 기후위기를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은 유엔인권이사회가 지금까지 12차례나 기후 인권에 관하여 발표한 결의의 정신과 일치한다. 또한 이 결정문은 세계인권선언 28조의 정신과도 상통한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질서와 국제질서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별 권리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조건도 권리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7월 유엔총회는 ‘건강한 환경 인권’을 새로운 보편인권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제 기후위기의 해결 없이 인권을 논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기후위기를 인권문제로 프레임하는 방식

기후위기를 인권의 문제로 바라볼 때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첫째, 인권은 잘못된 불의에 공분을 느끼는 정의감에 기반해 있다. 둘째, 인권의 렌즈로 기후변화를 바라보면 인간 개개인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므로 기후변화를 ‘인간화’하기에 유용한 관점이 만들어진다. 셋째, 인권은 보편적인 법적 보장책이므로 일단 확정되면 정치적 타협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규범의 지위를 갖게 된다. 넷째, 기후문제에 인권 정신을 적용시키면 기후변화에 책임이 적으면서도 많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가 수월해진다. 다섯째, 기후변화의 논의를 개개인의 차원으로 내려오게 하면 국제협상의 장을 보다 평등하게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안을 ‘인권’으로 접근하면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들의 자력화에 도움이 된다.

인권은 국가의 ‘정치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담론이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인권 침해로 규정되는 순간 인간 존엄성 차원에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물을 수 있게 된다. 기후 인권에 관한 국가의 책무는 크게 절차적 의무와 실질적 의무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절차적 의무에 있어서, 국가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시민교육과 홍보에 나서야 한다. 탄소 감축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며, 기후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촉진해야 한다.

실질적 의무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가나 공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 ‘존중 의무’가 있다. 둘째, 기업이나 민간 등 제3자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규제할 ‘보호 의무’가 있다. 셋째,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적으면서 기후위기의 피해를 크게 겪는 기후정의의 대상 집단, 즉 에너지 빈곤층, 폭염 취약계층, 저지대-상습 침수지역 주민, 반지하-옥탑방 거주민, 여성-아동, 장애인, 이주민, 홀몸노인, 산불 피해 주민, 야외 노동자, 노숙인, 농민, 어민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충족 의무’가 있다.

유엔 인권기구들과 인권 조약기구들의 관여

유엔인권이사회는 2008년 기후변화가 전 세계 인류와 지역사회에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권과 기후변화 결의>를 발표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2009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실에서 <기후변화와 인권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10년 동안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서 기후변화를 다루는 빈도와 강도가 대폭 늘어났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였던 미첼 바첼레트는 2021년 전 세계 인권에 대한 3중 위협으로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상실, 공해와 독극 물질을 꼽았다. 인권 특별보고관들도 기후위기 문제에 열심히 나서고 있다. 이중 기후위기와 관련 있는 주제는 교육, 안전한 식용수, 주거, 발전, 여성 차별, 극빈, 식량, 보건, 토착민, 국내 이산민, 이주자, 장애인, 초국적기업,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이다. 2015년에는 ‘인권과 환경’ 특별보고관이 임명되었고, 2021년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특별보고관 제도가 생겼다.

2018년 사회권위원회는 특별성명을 통해 기후위기가 인류의 인권에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온실가스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가 너무 미흡하므로 앞으로 각국이 NDC를 정할 때 반드시 인권 의무의 차원을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젠더 감수성, 참여, 투명성, 책무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고소득 국가들은 개도국의 기후적응을 돕고, 녹색기술을 이전하고,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2018년에 <일반권고> 37호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젠더와 관련된 재난 리스크의 감소>를 발표했다.

자유권위원회가 2018년에 발표한 생명권에 관한 <일반논평>은 기후위기와 인권의 관계설정에서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그전까지만 해도 기후변화를 전통적인 자유권(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문제로 다룬 경우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일반논평의 62항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환경훼손,

기후변화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발전이야말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생명권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장 긴급하고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다.”

기후 소송의 세계적 현황

2023년 6월에 발간된 런던정경대(LSE)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기후 관련 소송(climate litigation)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1986년부터 2023년까지 총 2,341건이 제소되었고, 그중 2/3가 2015년 이래 제소되었다. 지금까지 기후소송이 없었던 관할권에 서도 소송이 제기되고, 특히 글로벌 남반구에서의 기후소송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국가를 상대로 한 전략적 기후소송 외에도 기업(특히 화석연료 기업)을 직접 겨냥하는 기후소송도 증가 추세이다. 또한 탄소 배출 기업과 금융거래, 용자 업무 등을 다루는 투자회사, 상업은행 등에 대한 소송도 제기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 미주간인권재판소, 국제해사법재판소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자문 요청도 접수되어 있는 상태다. 수년 전부터 기후문제를 인권과 연관시켜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헌법재판소를 통해 현세대의 낮은 탄소 감축목표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소송이 제기된 것도 특징적인 현상이다. ‘생물다양성-기후변화 연계’에 관한 복합적 소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악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호출된 인권 담론은 기존에 환경정책이나 경제정책 중심으로 이해되어 오던 기후위기에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었다.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기후문제 개입, 기후정의의 관점, 기후 소송 등은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 커지면서 인권의 내포와 외연을 크게 변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끝/

[참고문헌]

기상청.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 (기상청, 2023).

김성진. "파리기후체제는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인가?" 『국제정치논총』 56권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6), pp. 359-401.

조효제. 『탄소 사회의 종말』 (파주: 21세기북스, 2020).

Setzer, Joana and Catherine Higham. *Global trends in climate change litigation: 2023 snapshot* (LSE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2023).

저자 소개

조효제 교수는 성공회대 사회학 교수 및 한국인권학회장이다. 저서로는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탄소 사회의 종말>, <인권의 지평>, <인권의 문법> 등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위원, 하버드대 인권 펠로, 베를린자유대 초빙교수를 지냈다. (Email: hyojecho@skhu.ac.kr)

